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7
----------	-----

2018. 4. 5.(목)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3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정원 : 3,481명 → 3,821명 (+340)
- 집행기관의 정원 : 1,607명 → 1,638명 (+ 31)
- 소방공무원 정원 : 1,761명 → 2,070명 (+309)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2)
 - 5급 : 18% 이내 → 19% 이내
 - 8급·9급 : 7.5% 이상 → 6.5% 이상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안 별표 3)
 - 일반직 : 1,479명 → 1,510명 (+31명)
 - ▶ 3급(+1명), 4급(+3명), 5급 이하(+27명)
 - 소방직 : 1,761명 → 2,070명 (+309명)
 - ▶ 소방령 이하(+309명)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인력을 보강하고, 환경전담국 설치, 혁신도시의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소방인력을 309명(소방령 이하)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급 1명, 4급 3명, 5급이하 27명 증원하며, 이를 위하여 5급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18% 이내에서 19% 이내로, 8급·9급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임.
-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에 적극적인 대응과 3교대 근무를 위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환경국 신설, 혁신도시 업무, 바이오산업 업무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적절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7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36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년 3월 1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7
----------	-----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 원 : 3,481명 → 3,821명 (+340)
 - 집행기관의 정원 : 1,607명 → 1,638명 (+31)
 - 소방공무원 정원 : 1,761명 → 2,070명 (+309)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5급 : 18%이내 → 19%이내
 - 8급·9급 : 7.5%이상 → 6.5%이상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1,479명 → 1,510명 (+31)
 - ▶ 3급 (+1), 4급 (+3), 5급 이하 (+27)
 - 소방직 : 1,761명 → 2,070명 (+309)
 - ▶ 소방령 이하(+309)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81명”을 “3,8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07명”을 “1,63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761명”을 “2,070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3% 이내	34% 이내	6.5% 이상	1.5% 이내

2.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2% 이내	4% 이내	10% 이내	9% 이내	18% 이내	30% 이내	27%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821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510	-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72	47	7	5	7	6
5급이하 소계	1,405	-				
전문경력관 소계	18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59	-				
연구관	30	1		27	2	
연구사	129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직 계	2,070	-				
소방정	18	6		12		
소방령이하	2,052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481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3,821명</u>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607명</u>	1. ————— <u>1,638명</u>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761명</u>	2. ————— ————— <u>2,070명</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개정사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정원조정 내역 (안 제2조)
 - 총정원 : 3,481명 → 3,821명(+340명)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 추계의 전제 : 증원 340명(일반공무원 31명, 소방공무원 309명)
- 추 계 결 과 : 인건비 138,319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 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38,319,824	20,505,453	28,160,821	29,005,645	29,875,815	30,772,090
인건비(일반공무원)	13,239,229	1,962,672	2,695,402	2,776,264	2,859,552	2,945,339
인건비(소방공무원)	125,080,595	18,542,781	25,465,419	26,229,381	27,016,263	27,826,751

※ 매년 임금인상률 3%(예상치) 적용 계산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행준